

## ◎문화재청고시 제2023-170호

「문화재보호법」 제13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적 「김포 덕포진」 등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(조정)고시합니다.

2023년 12월 26일

문화재청장

### 사적 「김포 덕포진」 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1. 고시명 : 사적 「김포 덕포진」 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2. 고시사항

가. 대상문화재

연번	지정종별	지정명칭	소재지	비고
1	사적	김포 덕포진	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산103-1번지 외	
2	사적	김포 문수산성	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산35-1번지 외	
3	사적	이천 설봉산성	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산24번지 외	

나. 관련근거

- 「문화재보호법」 제13조, 제35조제1항제2호
- 「문화재보호법 시행령」 제21조의2제2항
- 「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」 제2조의2

다. 기준의 적용

- 본 허용기준은 「문화재보호법」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,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.
-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「문화재보호법」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,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.

라.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: 붙임

- 문화재청 홈페이지(www.cha.go.kr) : 행정정보→법령정보→고시→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
-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(http://gis-heritage.go.kr) : 문화재 검색→고시이력 참조

3. 기준시행일 : 관보 고시일

4. 연락처

가. 문화재청

-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: 전화 042-481-4837 / 팩스 042-481-4849

- 주소 : (우35208)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(둔산동, 정부대전청사 1동)

나. 지방자치단체

○ 경기도 문화유산과 : 전화 031-8008-4771 / 팩스 031-8008-3349

- 주소 : (우 16444)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(매산로 3가, 경기도청)

○ 김포시 문화예술과 : 전화 031-980-2484 팩스 031-980-2479

- 주소 : (우 10108)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43, (사우동, 김포시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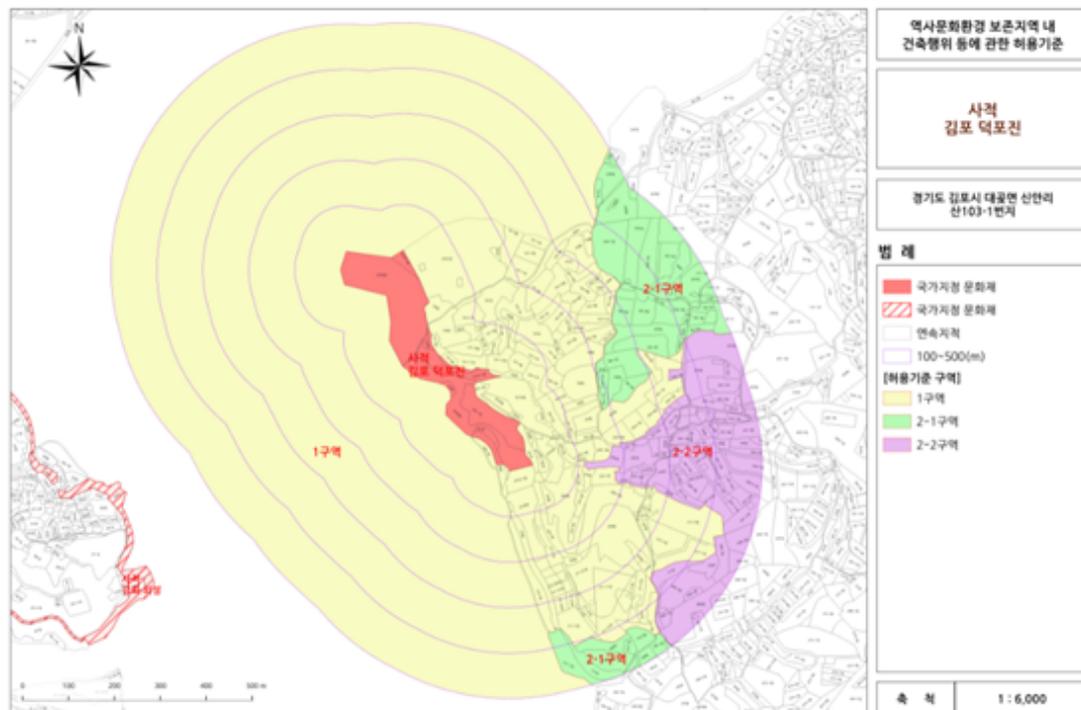
○ 이천시 문화예술과 : 전화 031-645-3655 / 팩스 0502-696-2014

- 주소 : (우 17379)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, (중리동, 이천시청)

붙임 사적 「김포 덕포진」 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(조정) 고시 1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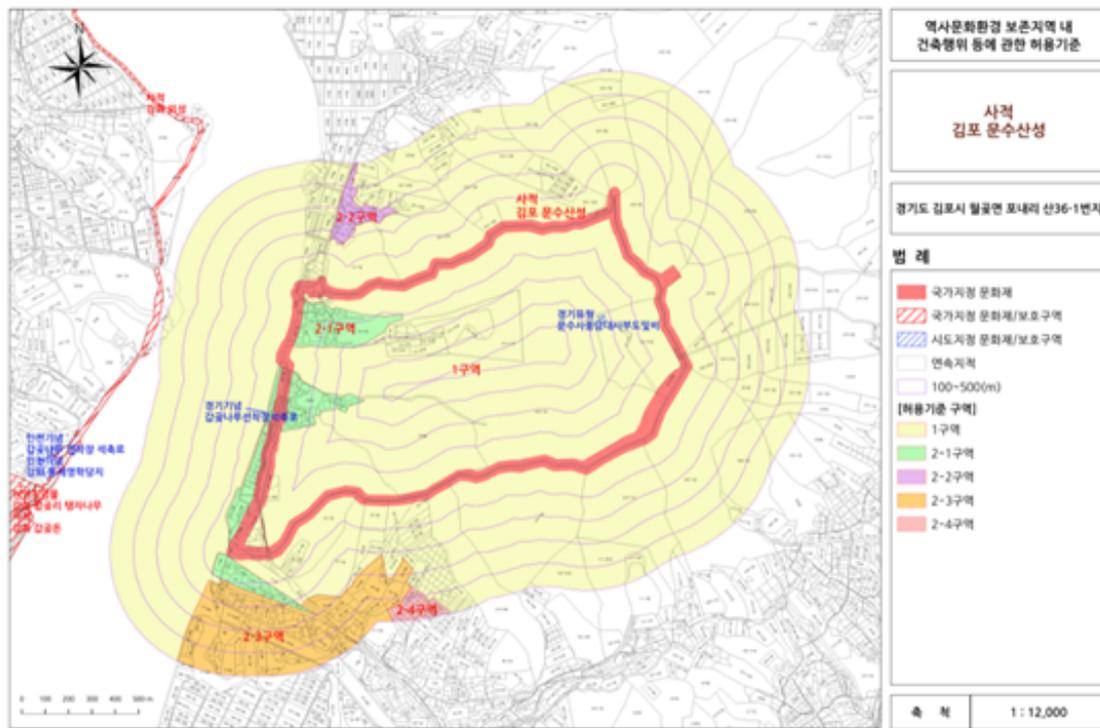
1. 사적 「김포 덕포진」

구분	허용기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3 이상)	
1구역	▫ 개별검토		
2-1구역	▫ 최고높이 8m 이하	▫ 최고높이 12m 이하	
2-2구역	▫ 최고높이 12m 이하	▫ 최고높이 14m 이하	
공통 사항	▫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		
	▫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		
	▫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		
	▫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		
	▫ 대기오염 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배출시설(소음·진동관리법), 악취배출시설(악취방지법), 폐기물처리시설(폐기물관리법) 등은 개별 검토함		
	▫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		
	▫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		
	▫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		
	▫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		
	▫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		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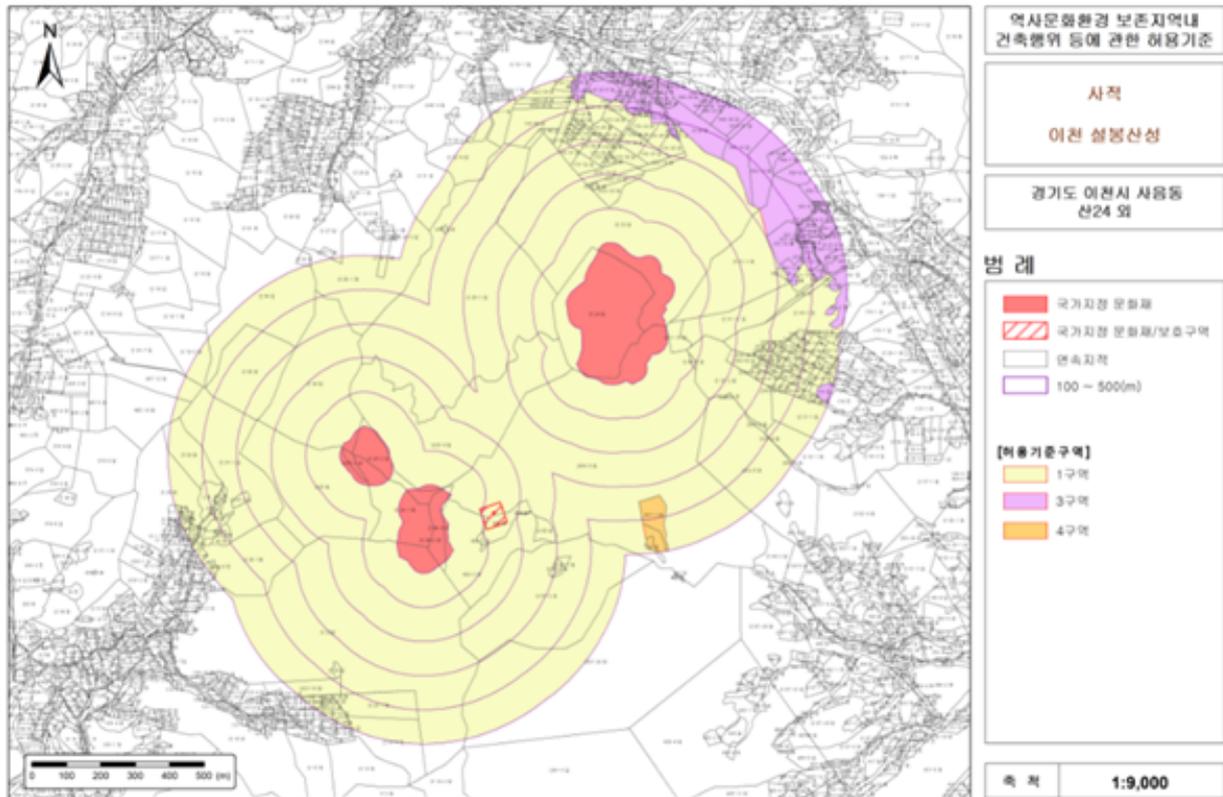
2. 사적 「김포 문수산성」

구분	허용기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
1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개별검토</li> <li>-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연면적(최고높이 포함) 10%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 (단 1회에 한함)</li> </ul>		
2-1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개별검토</li> <li>-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연면적(최고높이 포함) 10%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(단 1회에 한함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최고높이 7.5m 이하</li> </ul>	
2-2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최고높이 8m 이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최고높이 11m 이하</li> </ul>	
2-3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최고높이 11m 이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최고높이 14m 이하</li> </ul>	
2-4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최고높이 14m 이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최고높이 17m 이하</li> </ul>	
공통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</li> <li>◦ 최고높이는 옥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함</li> <li>◦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</li> <li>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</li> <li>◦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</li> <li>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</li> <li>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</li> </ul>		



3. 사적 「이천 설봉산성」

구분	허용기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
1구역	▫ 개별검토		
3구역	▫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	
4구역	▫ 보물 이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의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		
공통 사항	▫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		
	▫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		
	▫ 대기오염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배출시설(소음·진동관리법), 폐기물처리시설(폐기물관리법), 분뇨처리시설(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) 등은 개별 검토함.		
	▫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		
	▫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변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)		
	▫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		
	▫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		
	▫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 청장과 사전 협의함		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한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이용등의 사용을 금합니다.